

不公正 輸入事例에 對한 判決

美國 國際貿易委員會에 提訴된 事例中心

編 輯 室

○… 이 글은 臺灣의 타이뻬이와 우리나라…○
○…의 서울 그리고 日本의 東京에서 開催된…○
○…세미나에서 美國國際貿易委員會(ITC)…○
○…의 수석판사였던 도날드 케이·두발氏…○
○…의 講演內容을 간추린 것이다. 번역은…○
○…金明信 辨理士께서 수고해 주셨다. ……○
○… 编輯者 註 ……○

1. 개 요

美國 와싱頓市의 議事堂이 있는 캐피털힐언더
밀 요지에 건축술의 珠玉같은 한 건물이 있
다.

1839年에서 1866年사이에 건축된 이 건물은
全體가 대리석으로 되어있고 가운데에 노천마당
을 놓고 건물이 둘러쌓여 있으며, 둥근 아치형
의 높은 천정을 가진 로마 코린트 양식의 건축
설계로 되어있다.

보는 기준에 따라 별로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건물의 수도판은 너무 오래
되어서 쇠파이프의 철이 심하게 녹이 슬어서 그
판을 통하는 물을 마실수 없을 정도이다.

이 웅장한 건물은 가끔 희랍신전이라고도 불
리우며, 美國歷史記念物로도 지정되어 있다. 그
리고 멀지않아 美國國立博物館의 귀중한 재산
이 되게 되어있다.

이 건물이 바로 美國 國際貿易委員會(ITC)가

들어있는 뜻이며, ITC는 國際貿易分野에서 美
國의 議會, 大統領 그리고 國民을 위해서 중요
한 事實을 確認하고 研究檢討하여 判決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 講演의 目的은 ITC의 歷史, 機能 그리
고 節次의 일부를 특히 判決에 관한 것으로서,
소위 1930年에 立法한 關稅法 337條에 依據한
不公正 輸入事例에 대한 判決에 관한 것을 알리
고자 하는 것이다.

ITC는 의회의 立法으로 1916年도에 創設되었
으며, 이때는 美國이 世界 第1次大戰에 參戰하
기 직전이었다.

ITC는 美國의 關稅委員會로써 設立되었으며,
그 理由는 當時에 關稅가 對美輸入物量을 調節
하는 主要手段이었기 때문이다.

實際 그보다 3年前인 1913年에 聯邦所得稅法
이 통과될 때까지 美國政府의 主要所得源은 關
稅였다.

물론 그당시에는 輸入品에 대한 關稅의 基準,
특히 金屬製品과 農產物, 예를들면 설탕과 면등
에 대한 關稅率은 政治的 및 經濟的 爭點으로
지금보다 더 열기있게 토의되곤 하였다.

예를들면 최근 鐵鋼과 銅 輸入에 대한 關稅의
引上 또는 퀴타배정 또는 두가지를 동시에 실시
할 것을 美國大統領에게 전의한 ITC의 報告書
에 관하여 읽은 일이 있을 것이다.

大統領은 그 두가지 경우에 대한 ITC의 전의

를 승인하지 않고 대신에 鐵鋼의 경우와 같이 협상을 통하여 주요 鐵鋼生產國들과 그들의 對美 鐵鋼輸出의 자율규제를 위해서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을 맺도록 하는쪽을 택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大統領의選擇이 美國의 貿易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ITC가 중요한 역할,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保護主義自, 自由貿易主義者들을 포함한 美國內의 영향력있는 行政要員과 議員들 사이의 일반적 견해는 ITC가 美國의 國際貿易政策 수립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ITC는 그 필요성이 美國에서 증대해감에 따라 68年前에 設立되어 독립된 非政治的이고 객관적인 事實確認을 하는 주무기관으로써 확실한 근거에 의거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가능한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美國의 國際貿易政策을 수립 개발하는데 있어서 議會와 大統領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設立되었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도 ITC의 전반적인 임무이다.

실제 ITC가 수행하는 計劃實施機能은, 그중에서도 특히 완전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關稅와 貿易에 관련되는 모든 經濟的 資料를 수집 평가하는 기능은 지금보다 더 요구되고 인정받는 때도 없었다.

1886年에 美國議會가 막 싹트기 시작한 저돌적이고 독점성향인 鐵道產業을 규제하기 위하여 처음 독립행정기관인 內國상무위원회(ICC)를創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916年에 議會는 또 하나의 行政機關, 즉 ITC를創設하여 美國의 증대되는 國際貿易 특히 輸入을 調節하는데 聯邦政府의 立法部 및 行政部署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美國의 行政機關들은 1886年에 수립된 ICC를 시작으로 특히 1932年부터 1944年까지의 루즈벨트大統領 재임중에 크게 發展하였음은 自由企業經濟體制下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전국규모의 산업에 부수되는 준행정, 입법, 사법상 일어나는 여러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한 분명히 美國의 인하나의 접근방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ITC와 같은 獨立行政機關의 特징과 目的是

공정하고 효과적인立法政策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時日이 소요되는 사실확인 작업을 議會로부터 많이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議會와 法院으로부터 專門의이고 복잡한 사항에 관계되는 거대한 量의 提訴事件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그 이유는 그와같은 專門化된 獨立의이고 예를 들자면 關稅와 貿易사항에 專門知識을 가진 ITC와 같이 專門知識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많은 件數의 論爭과 紛爭을 다루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ITC는 항상 중요한 사실확인, 보고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1974年에야 비로소 처음 不公正輸入事件에 대한 준 사법적인 判決機能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事實確認機能을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本人으로서는 美國의 大法院判事였던 고올리버 웬델 홀모스 判事が 말한 『실제 사실을 判定하는 者만이 法律을立案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신봉하고 있다.

ITC가 國際貿易에 관한 政府의 政策決定과정에서 비록 완벽한 기구노릇은 못할지라도 특히 선거년도에는 貿易분쟁에 관해서는 완충 또는 안전밸브역 할을 함으로써 大統領과 議會에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음은 의심할바 없다.

ITC는 이러한 역할을 특정한 國內產業이나 경제분류, 즉 鐵鋼分野에서 신발과 纖維分野에 이르는 產業들을 대표하는 특수이익집단과 로비이스트들이 항상 발생시키는 열기를 흡수하고, 최소한 특정사건의 ITC調査 초기만이라도 그러한 분쟁사항을 議會의 당파적 정치싸움터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ITC는 어느 특정한 貿易關係 提訴事件論爭 또는 議會나 大統領이 겸토의 되한 것이나 ITC 자체에서 제기한 말썽스런 法案에 관한 열기면 당파적 토론의 주요공격을 일 반적으로 흡수해 버린다.

2. ITC의 歷史와 機能

지금은 ITC로 알려져있는 68年間이나 존속되어온 이 獨立行政機構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

록하겠다. 이機構는 비교적 소규모의 기구로서 450명의 종업원과 大統領이 임명하는 임기 9년의 위원 6명으로構成되어 있다.

ITC業務의 政治的 민감도는 3名이상의 委員이 같은 정당으로부터 임명될 수 없다고 하는 법규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법규정으로 위원장직은 2年 재임후에는 다른 정당의 위원에게 승계시키도록 되어 있다.

ITC의 業務를 수행하는 主要部署는 事務處, 총괄자문국 및 不公正輸入調查局등으로 되어 있다. 위원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총괄자문국의 기능은 第337條 소송사건에서 ITC와 공익을 대표하는 불공정輸入查調局의 判事들의 機能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運營室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야의 經濟學者, 生必品 專門分析家, 產業別 專門技術者들을 보유하고 반덤핑 및 상계판세법규에 의거한 判決機能을 갖지 않은 준입법적인 調査活動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또한 判事室은 法第337條에 의거한 不公正輸入事件에 대한 判決機을 가진 준사법적 調査活動을 전담하고 있다.

ITC에는 또한 훌륭한 도서열람실이 있고, 연락부서들이 있어서 각기 國務省과 같은 行政政府의 각 부처기구 및 大統領의 特別貿易代表(브록대사)와 연락을 가지며, 國會關係 담당부서도 있다.

ITC의 모든 機能은 배포된 자료에 포함된 市民案內書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案내書에서 ITC가 14個의 각기 다른 법규에 의거하여 사실 확인 및 자문(즉 判決機能을 갖지 않은)業務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법규중에는 수입규제(1974年제정 貿易法 第201條, 반덤핑법(1930年제정 關稅法 第733條, 735條) 및 상계 판세법규(1930年제정 關稅法 第303條, 703條)등이 있다.

ITC가 집행하는 기타법규들은 공산주의체제의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의 輸入으로 인한 시장봉쇄로부터의 구제(1974年제정 貿易法 第406條) 또한 農業計劃에 차질을 주는 輸入으로부터의 구제(농업조정법 第522條)조치도 한다.

ITC는 또한 여러가지 定期的인 期別經濟報告書作成 즉 일반판세표와 一般特惠關稅制度(1974年 제정 貿易法 第131條, 503條)에 의거한 기준

輸入稅와 關稅率의 改正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報告書를 작성 제출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報告書들은 關稅 및 貿易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의거하여 주기별 多國間 貿易協商에 대비하는데 특히 귀중한 資料이다.

또한 특정한 國內產業에 대한 輸入의 충격에 관한 研究도 많이 실시하며, 또 이러한 輸入이 美國의 生产, 고용, 소비,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研究도 실시한다.

ITC는 또한 신청에 의해 國際貿易問題에 관한 많은 專門的인 實體 情報를 산업체, 노동조합, 소비자, 언론 및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3. 關稅法 第337條의 歷史

1922年에 제정된 關稅法 第316條로 처음 제정된 不公正輸入行爲에 대한 법조항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1930年에 제정된 關稅法 第337條로서 재입법되었다.

즉 第337條는 美國內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한 분야의 산업을 파괴하거나 상당한 해를 끼치게 되거나 또는 그러한 산업의 정착을 저해하거나 또는 美國內의 거래나 상행위를 억제 또는 독점하게 될 우려가 있는 商品의 輸入行爲에서 어떤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變更이나 不公正한 行爲를 不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法은 第1次 世界大戰後에 世界的으로 팽배한 不安正하고 不確實한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議會에서立法한 것이다.

당시의 그러한 시장상황은 美國內에서 불신과 고립주의적 경향을 조장시켰다. 그 法은 1930年代의 保護主義者들의 압력과 심화되는 불황에 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30年에 재제정된 것이다. 1974년까지 즉 44年間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法第337條에 의거하여 ITC에 제소한 件數는 별로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껏 얻어낼 수 있는 구제 조치가 大統領이 美國輸入에서 제소된 물품을 제외시켜 출것을 선의하는 형식이었고, 둘째로 절차가 장기간을 요했고 보통 몇년씩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이 法은 실제로 1974年度에 소생하게 되었다. 그 해에 제정된 貿易法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이 법규를 수정하였다.

① 關稅委員會를 國際貿易委員會(ITC)로 이름을 바꾸고 幅權위한 임무와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② 建議權과는 달리 法第337條에 의한 調査에서 判決權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ITC가 행사하는 유일한 判決技能이다.

③ 判決權을 강화하기 위해서 法第337條에 의한 調査가 行政소송법(5U.S.C. 제554조, 1964조)의 규정에 해당되게 하여서 判事가 행하는 公式判決(준사법적 심판형태의 심리)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 判事의 권위 및 독립성, 권한은 그 行政訴訟法으로 保護되고 있다. 새로운 訴訟法에 따라 ITC가 공포한 실무소송규칙에 의거하여 判事는 委員會의 최종조치로서 권고판결을 하였다.

1983年에 ITC의 규칙은 判事が 초기판결을 할 수 있게 수정되었으며, 그 초기판결은 30日 이내에 행정적 재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ITC의 최종명령이 되는 것이다.

④ 얻어낼 수 있는 구제조치는 범위를 넓혀서 제외명령뿐만 아니라 중지, 중단명령도 할 수 있게 하였다.

⑤ 모든 법적변론이 허용되어 있어서 ITC로 하여금 特許効力에 대한 判決도 하는 권한을 갖게 하였다.

⑥ 12個月 또는 복잡한 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8個月의 법정시한을 규정하여 어떠한 경우나 이유로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1974年이래 ITC가 판정한 法第337條에 의한 調査件數는 매년 꾸준히 늘어났고 어떤 때는 극적으로 크게 증대되어 왔다. 제소된 신규건수는 1981年度의 18件에서, 1983年에는 46件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50餘件이 제소될 것으로 보이며 1985年度에는 75件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사건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같은 法律下에서 지나간 40년동안 유명무실하게 활통해온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인상깊게 변한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1974年 法改正에 따른 것이고 특히 ITC가 엄격히 지켜온 법정기밀 제한에 기인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사건제조자들이 不公正輸入으로부터의 구조를 제소하는데 있어서 美國의 地方法院보다는 ITC를 더 택하게 된 요인은 ITC의 法第337條 判決에 대한 抗訴를 포함하여 모든 特許에 관한 抗訴裁判을 하나의 新設抗訴裁判所인 소위 美國聯邦巡回抗訴法院(CAFC)으로 통합한 1982年度 법개정이다.

각 지역 항소법원간의 재판사건 유치경쟁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서 부당한 權利侵害 또는 輸入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地籍所有權者는 지금은 ITC가 제공하는 조속한 구제조치를 더욱 많이 요청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제소가 사건에 대한 抗訴裁判이 소위 CAFC라는 法院에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關稅法 第337條에 의한 訴訟節次의 特徵

(1) 法庭期限

ITC의 最終判決은 12個月(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18個月)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반면 같은 사건을 법정에서 할 경우에는 判決을 내리는데 3年 내지 5年이상이 소요된다.

그러한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격렬한 소송사건은 專門辯護士의 能力과 協助 그리고 強力하고公正한 判事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 있다.

公正하고 正當한 進行을 保障하는 准司法的 行政節次

① 地方法院의 該次보다 절차에 있어서 더 응통성있고 형식이 간소하다.

② 증거규정이 연방증거규정보다는 약간 완화되어 있다.

③ 일평생 자격을 보유하는 判事의 擔當業務과 決定權의 獨立性은 行政訴訟法 인사관리규칙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보장되어 있다.

i) 判事는 인사관리처에 비치되어 있는 判事名符에서 사건이 할당되며, 그 명부에 기재된 判事들은 힘든 경쟁시험의 성적에 따라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다.

ii) 判事는 배심원없이 民事事件을 심리판결하는 國 또는 聯邦法院의 初審判事의 역할을 한다. 判事는 공포된 대리권 규정 및 節次에 의거하여 감정인의 직접 또는 반대신문을 포함한 정식 공개심리를 주재하며, 판권증거를 인정하며, 소환장과 保護命令을 발부하며. 모든 申請을決定하고 사실인정과 법규정에 따라 주문과 함께 이유를 기재한 판결을 한다.

判事는 行政節次에서 진실로 요직을 맡고 있으며, 때로는 진정한 일꾼이기도 하다. 특히 法廷時限에 의거한 法 337條 소송진행에서 그려하다.

iii) 美國에는 1,100名의 聯邦判事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 있으며, 이들은 30個의 연방부처 및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ITC에 소속된 4名을 포함하여 이를 判事들은 美國經濟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재산권 및 공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양의 사건에 대한 초심판결(예를 들어 ITC의 최초판결)을 발부한다.

iv) 法第337條調査에 대한 ITC의 最終判決은 약 50대 50비율의 判決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소자나 피소자 어느쪽에도 아직까지는 치우치지 않았다.

(3) 事件當事者, 主題 및 紛爭의 多樣性

① 제소자는 보통 美國국내 제조업자로서, 소기업에서부터 多國의企業(GE, K Mart, Tandy, Sears & Roebuck)에 이르는 업자들이다.

② 피소자들은 보통 외국製造業者와 輸入業者들로서, 홍콩 뒷골목의 소규모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獨逸의 KRUPP회사와 같은 대형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피소자들은 유럽 및 극동소재의 업체들이다.

유럽의 나라로서는 獨逸, 화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고, 극동에는 臺灣, 日本, 港香, 韓國, 싱가풀이 있고 기타 국가로서 캐나다, 호주, 펜란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폴란드, 영령 서인도제도등이 있다.

③ 法第337條에 해당하는 不公正行爲의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여 特許, 商標, 著作權에 대한 권리侵害을 포함하며 또한 독점기도 및 약육강식적 판매등과 같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나 허위

산지제시나 타업자의 상업포장 또는 무역비밀도용 또는 책임전가, 허위광고와 같은 부정경쟁들을 포함하고 있다.

④ 法第337條에 의한 調査에서 나타나는 주제의 다양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실례로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과 ITC의 통로判事들이 판결한 一部事件을 설명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례를 듣다면 특허와 관련된 法第337條의 調査에서는 어린이 놀이용 Skate Boards, 거대한 통압축기 Copper Rods(89), 스위스에서 수입한 Apple Computer(140), 이스라엘의 Cat-Scanners(123, 1982), Microcarriers(129, 1982), 스웨덴의 Flow Injection Analysis Apparatus and Paper Making Machines(118, 1983 : 82, 1981). 韓國의 Caulking Guns(139, 1983), 화란의 Cardiac Pacemakers(162), 獨逸, 프랑스, 日本의 High Voltage Circuits Breakers(64), 臺灣의 Tennis Rackets(155, 1984), 스페인의 Sausage Casings(148/149, 1984) 등이 포함되어 있다.

商標에 관련된事件에는 대만의 Rubic Cube Puzzles(79, 1981), 臺灣의 Miniature Toy Vehicles(122), 캐나다의 Duracell Batteries(165) 등이 포함되어 있다. 著作權에 관한 事件으로는 日本의 Audio-Visual Games(Pac-Man), 臺灣의 Cloisonne Jewelry(164, 1984)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法第337條에 규정된 公益要索는 최고우선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이다.

① 그러므로 ITC는 법규에 의하여 보건성, 법무성 및 聯邦貿易委員會와 協議하게 되어 있으며, 協議事項은 구제조치의 대상(法第339條 위반이 있다고 가정하였을때)이 미치는 영향이 보전후생, 美國經濟의 경쟁력, 미국의 類似商品 또는 직접 경쟁상품의 생산 및 美國의 소비자들에 가져오는 영향등에 관한 것이다.

② 法第337條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예 : 美國으로부터의 제소상품배척)의 집행이 공익에 반한다는 확증이 있으면 法第337條 위반이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조치는 ITC에 의해 요

령 있게 사실상 배제된다.

이러한 예는 Crankpin Grinders 사건(60)에서 볼 수 있다. 그 사건에서 ITC는 제소된 輸入品이 美國에서부터 배척될 경우, 美國內 Crankpin Grinders 生產業者가 국내자동차공업의 전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不公正行爲(특히 침해)의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제조치를 판결하기를 거부하였다.

(5) 大統領의 再檢討

① 大統領은 法第337條 위반에 대한 ITC의 모든 확정판결을 60일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大統領이 (정책적인 자유만으로) 찬성하지 않을 경우 大統領의 결정은 ITC의 最終判決을 기각하며 이러한 결정은 재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Welded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事件, ITC Inv. No. 337-TA-29, U.S. ITC Pub. 제863호(1987년 2월)

② 위 인용된 사건에서 ITC는 日本製造業者가 不公正競争 관행으로 美國에 수출하는 파이프와 투브를 평균 변동생산원가이하의 가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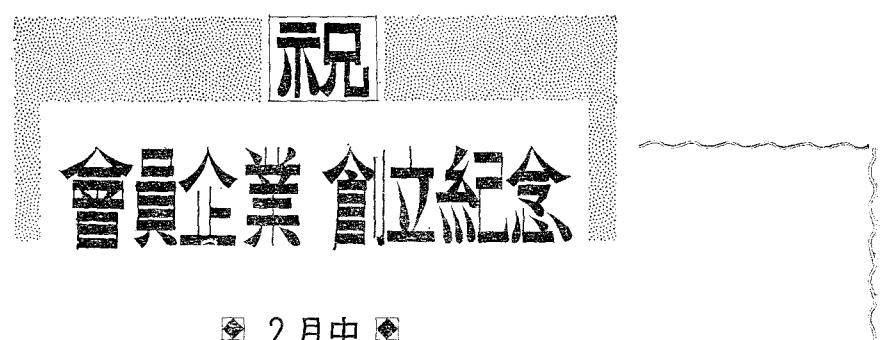
販賣하고 있으며, 그러한 판매가 약육강식적 판매부적으로 사업적 정당성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기타 외국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상당히 감소시킴으로써 美國의 貿易과 商業을 위축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부당하게 저가의 日本製 파이프와 철강이 기타국으로부터의 파이프 및 鐵鋼輸入을 배제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TC는 평균 변동生産價以下の 價格으로 더이상 美國에 輸出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지명령을 발부하고 사분기마다 명령에 승복하는 報告書를 제출하도록 피소자에게 명령하였다.

大統領은 ITC의 그 判決(43)聯邦登錄番號 第17789號, 1978年 4月 25일을 다음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즉, 이 判決은 美國經濟에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며, 美國의 국제관계에 해를 끼치고, 美國의 不公正貿易慣行法의 중복과 모순을 회피할 필요가 있고, 철강공업과 美國소비자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계속>



◎……本誌 紙上을 빌어 다음 會員企業의 創立紀念日을 慶賀합니다. ……◎

(日字順)

韓都工業(株)	(代表: 金容善)	19周年	(2. 1)
明洞産業社	(代表: 鄭觀淳)	1周年	(2. 10)
三星半導體通信(株)	(代表: 姜晉求)	8周年	(2. 15)
(株) 모나미	(代表: 宋三錫)	25周年	(2. 15)
韓國코스타防水製造所	(代表: 趙奇鏞)	2周年	(2. 21)
現代電子産業(株)	(代表: 鄭夢憲)	2周年	(2. 23)